

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

결 투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3년 12월 13일

○ 회부일자 : 1993년 12월 13일

3. 폐 지 이 유

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입학할 중학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교육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004호, 93. 11. 13)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주 요 골 자

○ 교육법시행령 제69조(입학 등의 허가) 제5항에 근거.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,

본 폐지조례안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입학할 중학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법시행령 (대통령령 제 14004호, 1993. 11. 13)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하려는 것이며,

한편 당해 조례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의 경과로 폐지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, 폐지조례안의 제명은 ○○○조례폐지조례안으로 하고, 안 본문에 ○○○조례는 폐지한다고 규정하는 등 일반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폐지조례안 및 참고자료 : 별첨